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555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 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1332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229,660원, 지방교육세 13,758,400원, 농어촌특별세 6,885,980원, 합계 182,87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7, 18행의 "제40조의3 제3호"를 "제40조의3 제2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해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완납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조성공사의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조기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사용 승낙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 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대가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의 사용승낙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부터 4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015. 5. 7.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을 제3호증),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지역 토지를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2013년경 잔금을 지급한 후 신축공사를 하였으나(을 제4, 5호증), 원고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¹⁾이 입법예고된 이후인 2016. 11. 10.경 공사를 착공하고, 2017. 10. 27.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²⁾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에서 정한 감면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거나 감면요건이 충족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는 2016. 12. 31.까지 원고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1) 제1심판결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된 것)'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약칭하였다.

2) 제1심판결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약칭하였다.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⑥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은, 매수인이 1995. 2. 27.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5. 10. 27.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개정 전 관련 법령에서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1995. 8. 21. 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에서 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15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